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2021. 6. 10.(목)
제391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
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
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윤남진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1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21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의 위치, 사업, 사용료, 사용·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관련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정하고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위치(안 제2조)
-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전시판매장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(안 제8조, 제9조)
- 판매장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0조)
- 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(안 제14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우경수)

가. 제출배경

-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성안길점 설치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('13년)하였으나, 폐점('16년) 후에도 존치
- 현재 운영 중인 전시판매장 도청점은 관련 조례 부재
- 전시판매장의 운영 근거 마련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, 매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도의 지도·감독을 포함하여 현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 검토내용

- 먼저,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
 - 공항점, 성안길점은 각각 '07년, '13년 개장하여 운영되어 오다 매출 부진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점하였으며, '07년 개장한 도청점만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

구분	도청점	공항점	성안길점
개 점 일	2007. 7. 2.	2007. 11. 1.	2013. 12. 26.
위 치	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(서관 1층)	청주국제공항 1층	충북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336번길 105
매장규모	128㎡(38.7평)	25.12㎡(7.5평)	전시판매장 1, 2층 [421.8㎡(128평)]
관련근거	-	-	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
운영방법	위탁(충북기업진흥원)	위탁(충북기업진흥원)	위탁(충북기업진흥원)
운영여부	운영 중	폐점('08. 12.)	폐점('16. 12.)
폐점사유	-	매출 부진에 따른 지속적 적자 누적으로 운영상 어려움 발생	활성화 노력에도 투입 대비 매출실적 미흡 등 성과 부진

○ 현재 운영 중인 도청점의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음

- 전시제품 현황

구 분	2016	2017	2018	2019	2020
입점업체	71	71	75	79	80
품 목	456	401	482	501	529
판매수량	14,130	16,943	13,880	15,855	21,190

- 방문객 및 상담건수

구 분	2016	2017	2018	2019	2020
방문객수	4,878	5,462	5,087	4,758	4,293
상담건수	2,365	2,481	2,745	2,736	2,468
중개건수	99	62	51	81	56

- 판매현황

구 분	2016	2017	2018	2019	2020
판매액(천원)	255,435	257,790	259,242	318,456	315,212

○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○ 안 제2조는 전시판매장의 위치를 '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(문화동)'에 두는 것으로 폐지된 성안길점 위치정보를 현재 운영 중인 도청점으로 바로 잡는 것으로 타당함

○ 안 제5조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라 판매장의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용·수익허가를 하거나, 관리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

- 안 제5조제2항은 전시판매장의 사용허가 기간을 현행 '위탁기간 3년'에서 '5년 이내'로 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제1항1)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따르도록 규정함
- 안 제8조는 행정재산 사용·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시 판매장 설치 목적을 고려한 최소한의 요율인 '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10'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음

- ☑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24조에서 행정재산의 대부분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본 조례에서 사용료 요율을 1천분의 10 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 자문을 받음
- ☑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, 본 조례의 사용료 요율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2조의 수권 범위 내이며,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는 일반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데 비해 본 조례는 특별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상충되지 아니함

- 안 제9조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료 감경* 또는 면제** 할 수 있도록 규정함
 - * 감경 : 사용료의 100분의 30
 - ** 면제 :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하는 경우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- 안 제12조는 전시판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서류 및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하도록 하여, 전시판매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함

1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(사용·수익허가기간) ①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
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·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
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

- 안 제14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설치된 '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'의 설치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(도청점)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, 전시판매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-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시판매장의 사용허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측면도 있음
-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직영점이나 대리점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판매장 기능 수행,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통한 기업의 인지도 상승 및 매출액 증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, 전시판매장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지역의 중소기업제품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임